KOSHA GUIDE

C - 25 - 2018

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안전인증) 및 제35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의 규정에 의거 추락·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안전인증) 및 제35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 (이하 "안전인증규격"이라 한다.)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 된 가설기자재를 1회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*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안전방망,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.

※ 장기간*이란 일본 일반사단법인 가설공업회의 "경년 가설기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"의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에 도달한 경우로 한다.[부록2] 참조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재사용 가설기자재"라 함은 사업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를 말한다.
 - (나) "관리"라 함은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부판단을 위한 판정, 정비, 수리, 성능 시험, 폐기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 - (다) "정비"라 함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부착된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 제거, 가설기자재의 나사관·볼트·너트 등에 있어 기름 부족, 부식· 마모 등